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고광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2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고광민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정책 유효성 검증 실시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시)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폐지 대상 정책 등)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정책 등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폐지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폐지 요청이 있는 정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폐지대상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